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15호 2016. 10. 25(화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41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. 10. 25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
  - 근거법령인 「주택법」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분리되어 2016. 8. 12.자 제정·시행
  -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·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
- 위원회 운영관련사항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관리법 제·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
  -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(주택법⇨공동주택관리법)
  - 지원대상 및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대상의 명확화
    - 제4조 대상의 정비
    - 제7조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정비
  - 제8조 위원회 운영관련 정비
  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- 위원회 운영관련사항 정비
  - 위원의 위촉자 명확화
  -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14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/☎032-560-4738, FAX 032-560-2769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”을 “조례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제85조제1항”으로, “지원함으로서”를 “지원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을 “및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수립 시행”을 “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43조제9항에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4호 중 “시설물의 보수”를 “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”를 “소규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
2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사용검사일”을 “준공(사용검사, 승인)일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”를 “보조금지원은 준공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용검사일”을 “준공일로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“구 예산중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중”으로, “매회계년”을 “매 회계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혜대상 사업에 대하여는”을 “수혜

대상은”으로, “동종”을 “같은 종류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총 사업비”를 “총사업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
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축·토목·조경 주택관리”를 “건축·토목·조경·주택관리”로, “구의원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

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담당자”를 “업무 담당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개의”를 “회의를 시작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출 하여야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5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

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  
제14조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<u>지원함으로써</u>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제85조제1항----- ----- ----- <u>지원함으로써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「주택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및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<u>수립 시행</u> 하여야 한다.	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 · 시행</u> ----- -----.
제4조(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)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	제4조(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) ① ----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5조제1항 ----- -----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- 1. ~ 13. (생략)
- 1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. 단, 위험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-----  
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13. (현행과 같음)
- 14. -----  
-----  
----- 사항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----- 소규모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
- 2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② -----  
준공(사용검사, 승인)일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

(자체부담 사업비 포함) 및 산출근거

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,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7조(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,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략)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예산, 건설, 재난, 건축, 도시개발관련 실(과)장과,

-----  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 
-----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



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


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제1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

제1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<삭 제>